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 거주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병자, 선천성신경인성병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책자 160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9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책자 88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 ###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